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및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자연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환경보건정책관을 각각 자연보전국·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하고, 홍수기의 체계적인 대응과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기존의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을 각각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혈액, 조직 등 생체시료의 저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강우레이더 운영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대응 등을 위해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팀은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로 감축했던 환경부 운영정원 2명(6급 2명) 및 유역환경청 운영정원 1명(6급 1명)을 다시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제12호의2 및 제14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갈등조정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으로,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갈등조정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국제협력과·신기후체제대응팀·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를 두되, 기후전략과장·기후경제과장·국제협력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업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신기후체제대응팀장·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수립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6.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9.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참가 지원
6.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⑩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⑪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

급 기관에 대한 지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2.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3.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14.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5. 녹색전환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18.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총괄·조정
3. 환경벤처기업 및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해외 마케팅 지원
 8.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10. 환경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
 11. 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5.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16.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협의
7.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인증업무의 총괄·조정
8.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1.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조정
1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3.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4.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5.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18.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
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

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
· 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9.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⑯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후·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

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 ㉔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
항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1.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

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
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
관으로 하며,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③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2
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
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정책총괄과 · 물이용기획과 · 토양지하수과 · 물환경정책과 · 수질관리과 · 수생태보전과 · 생활하수과 · 수자원정책과 · 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물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 · 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6.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7.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9.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2.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5.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통합 정책에 관련된 사항
- ⑧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4. 상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6.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5.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6.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7. 먹는 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8. 샘물 허가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0.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2.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⑨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11.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2. 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연구 및 발전
14. 지하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사·관측·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6.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7.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1.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⑩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5.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2. 호소의 물환경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13. 낙시금지구역 및 낙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15.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16.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7.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0.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1. 오염총량관리 관련 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
한 사항
22.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4.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26.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3.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35.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36.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37.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8.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
39.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
한 사항
40.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⑪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4.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15.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8. 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19.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20. 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⑫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및 석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6. 생물축정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⑬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9.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10.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수도, 하수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14.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⑭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연구 및 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5.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해수민물화 및 지하수·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4.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5.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6.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댐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0.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21.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22. 댐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수자원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⑮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7.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2. 도시침수 대응에 관한 사항
13. 환경부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친수구역 구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16. 친수구역 구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친수구역 조성 차별화 전략·비전의 수립
18. 친수구역 조성 정책 추진 및 효과 분석
19. 친수구역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 지침 등의 마련 및 운용
21.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2.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3.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협의
24.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관리
26.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수립 및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환수

27. 친수구역조성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28.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⑯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11.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
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
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협의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정·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운영

제8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생활폐기물과·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8.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출입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0.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생활환경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되, 환경보건정책과장·환경피해구제과장·생활환경과장·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제품관리과장 및 화학안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10.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및 보급

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운영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11.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
17.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8.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5.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6.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이행
27.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9.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2.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11. 살생물제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
항
22. 화학사고 표준·실무 매뉴얼 총괄·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관리
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관리

제23조의2제2항 중 “정보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감축목표팀장은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을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 중 “위해우려제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으로”를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환경보건정책관:”을 “환경보건국:”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10”을 “61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1”을 “10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9”를 “60”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2”를 “21”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90”을 각각 “39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

보 “2”를 “3”으로 하며, 수의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다음에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를 신설하고, “기상연구사 2”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을 “2”로 하고,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5”를 각각 “62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주사 “24”를 “2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9”를 “98”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0”을 “6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5”를 “49”로 한다.

별표 14 중 행정주사보 “9”를 “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1”을 “4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5”를 “8”로 하고, 환경서기보 “10”을 “7”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1”을 각각 “164”로 하고, 방송통신주사 “11”을 “12”로 하며, 방송통신주사보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16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1”을 각각 “164”로 하고, 방송통신주사 “11”을 “12”로 하며, 방송통신주사보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1) 중 “생활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2) 중 “자연환경정책실”을 “자원순환국”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를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사항, 갈등조정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환경교육팀장이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보좌하는”을 “사항과 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를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로, “대변인이, 갈등조정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환경교육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각각 보좌한다”를 “대변인이 보좌하고, 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정책과장이 분장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별표 7에 따른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정원 중 2명과 별표 12에 따른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과 별표 1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정원 중 9명,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3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5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

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③ 별표 12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정원 중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중 6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5명으로 본다.

④ 별표 1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중 10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4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 및 환경서기보 5명으로 본다.

⑤ 별표 16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중 1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6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

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 ⑥ 별표 16의3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정원 중 1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7에 따른 전문경력관 나군(통신 담당) 1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환경보건정책관”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제 14호----- ----- -----.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갈등조정팀장</u>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하고, <u>갈등조정팀장</u> 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u> 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u>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u> ----- ----- ----- <u>기술서기관</u> ----- ----- ----- -----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⑤ ----- -----

한다.

1. ~ 9. (생 략)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 략)

⑥ ~ ⑨ (생 략)

⑩ 갈등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및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

2. 환경 관련 주요 갈등사안의 예방·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환경 관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 관련 갈등관리전문가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 관련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7. 삭 제

8. 삭 제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자연환경정책실) ①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자연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녹색전환정책관·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으로 하며, 녹색전환정책관·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및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자연환경정책실에 녹색전환정책과 · 녹색산업혁신과 · 녹색기술개발과 · 통합허가제도과 · 환경교육팀 · 자연생태정책과 · 생물다양성과 · 자연공원과 · 국토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과 · 자원순환정책과 · 폐자원관리과 · 생활폐기물과 · 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 ·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 · 조정

3항제3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과 · 기후경제과 · 국제협력과 · 신기후체제대응팀 · 기후변화국제협력팀 · 녹색전환정책과 · 녹색산업혁신과 · 녹색기술개발과 · 통합허가제도과 · 환경교육팀 · 대기환경정책과 · 대기미래전략과 · 대기관리과 · 교통환경과를 두되, 기후전략과장 · 기후경제과장 · 국제협력과장 · 녹색전환정책과장 · 녹색산업혁신과장 · 녹색기술개발과장 ·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 · 대기미래전략과장 · 대기관리과장 · 교통환경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신기후체제대응팀장 ·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2.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3.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수립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6.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9.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14.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 및 녹색 일자리 창출
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연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
책에 관련된 사항

⑧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
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총괄
· 조정

3. 환경벤처기업 및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의 육
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
계작성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
업의 지원 및 육성

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
의 수립 및 종합·조정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해
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해
외 마케팅 지원

8.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
책에 관련된 사항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
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
실가스 감축량 등록·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
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
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
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
항

<u>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u> <u>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9. <u>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u> <u>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u> 10. <u>환경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u> <u>제 분석</u> 11. <u>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u> <u>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에</u> <u>관한 사항</u> 12. <u>삭 제</u> 13. <u>삭 제</u> 14. <u>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u> <u>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15. <u>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u> <u>색경영에 관한 사항</u> 16. <u>삭 제</u> 17. <u>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u> <u>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u> 18. <u>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u> <u>리제도의 운영</u> 19. <u>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u> <u>운영</u> 20. <u>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u> 21. <u>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u> <u>에 관한 사항</u> 22. <u>삭 제</u>	8. <u>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u> <u>제 총괄 및 조정</u> 9. <u>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u> <u>관한 사항</u> 10. <u>청정개발체제(CDM) 승인</u> <u>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u> <u>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⑨ <u>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u>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u> <u>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u> <u>원 및 협조</u> 2. <u>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u> <u>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u> 3. <u>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u> <u>협력에 관한 사항</u> 4. <u>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u> <u>환경협력에 관한 사항</u> 5. <u>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u> <u>· 참가 지원</u> 6. <u>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u> <u>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u> 7. <u>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u> <u>관한 사항</u> 8. <u>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u> <u>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	--

⑨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협의
7.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인증업무의 총괄·조정
8.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1. 삭 제
12.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조정
13.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⑩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 ⑪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4.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5.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6.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⑩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

1.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

<u>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u> 5. <u>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 기법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u> 6. <u>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7. <u>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u> 8. <u>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 ·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u> 9. <u>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⑪ <u>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시행</u> 2. <u>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 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3. <u>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u> 4. <u>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 정에 관한 사항</u>	<u>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 원</u> 6. <u>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u> 7. <u>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u> 8. <u>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 의 총괄</u> 9. <u>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 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10. <u>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 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 한 사항</u> 11. <u>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u> 12. <u>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u> 13. <u>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 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 정</u> 14. <u>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녹색 일자리 창출 에 관한 사항</u> 15. <u>녹색전환 정책의 개발 및 추 진에 관한 사항</u>
--	--

5.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
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
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
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
자료의 발간·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
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
련 업무 총괄

⑫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
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16.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
괄

18.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
책에 관련된 사항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
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총괄
· 조정

3. 환경벤처기업 및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의 육
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
계작성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
업의 지원 및 육성

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
의 수립 및 종합·조정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해
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해
외 마케팅 지원

<u>사항</u> 3. <u>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u> 4. <u>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5. <u>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u> 6. <u>생태 · 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u> 7. <u>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u> 8. <u>생물다양성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 · 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9. <u>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10. <u>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u> 11. <u>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u> 12. <u>국립생태원의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u> 13. <u>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14. <u>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u>	8. <u>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u> 9. <u>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u> 10. <u>환경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u> 11. <u>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u> 12. <u>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13. <u>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u> 14. <u>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u> 15. <u>제품 환경성 표시 · 광고 관리제도의 운영</u> 16. <u>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u> ⑭ <u>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중 · 장기 정책의 수립</u> 2. <u>환경기술의 연구 · 개발지원 및 진단 · 평가에 관한 사항</u> 3. <u>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u>
--	--

치 평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연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협의

7.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총괄·조정

8.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1.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조정

1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3.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4.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11.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⑭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

15.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18.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⑮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9.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⑯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 · 협의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 · 총괄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⑯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 · 예규 · 지침 등의 제정 · 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 관리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 ·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 자료의 발간 · 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운영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
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운영

⑰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
항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
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
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촉
진에 관한 사항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
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
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후·대기 연계 예측모델
의 개발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
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자원순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⑮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⑮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구

9.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⑪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폐기물관리기본 계획의 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출입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⑫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

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⑪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

<u>립</u> 2. <u>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 R)의 운영</u> 3. <u>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육성</u> 4. <u>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u> 5. <u>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u> 6. <u>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u> 7. <u>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u>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0. <u>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u> 11. <u>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u> 12. <u>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운영</u> 13. <u>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u> 14. <u>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u> 15. <u>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6. <u>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u> 17. <u>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u> 18. <u>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u> 19. <u>대기관리권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20. <u>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u> ⑳ <u>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u>
---	--

㉑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

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
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 매연여과장치 · 산화촉매장
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
급에 관한 사항

17.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
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
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21. 자동차 제작 · 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
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관
리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
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 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무공해 ·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
급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
조 · 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 생활환
경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
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활
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대기환경정책관 · 기후변
화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으
로 하며, 대기환경정책관 · 기후
변화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
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관
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물통합정책관 · 물환경정책
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하며,
물통합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생활환경정책실에 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국제협력과·신기후체제대응팀·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생활환경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되,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환경피해구제과장·생활환경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2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와·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생활하수와·수자원정책과·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물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과장 · 화학물질정책과장 · 화학
제품관리과장 및 화학안전과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
후전략과장 · 기후경제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 ·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신
기후체제대응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으로 보한다.

⑦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의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운영
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
항
5.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
항 총괄
6.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
항 총괄
7.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9.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
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2.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
항
13.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5.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통합 정책에 관련
된 사항

의 배출량 조사

6.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8.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후·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 9의2.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 9의3.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7. 그 밖에 생활환경정책실 내

⑧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4. 상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6.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한 사항

14.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5.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6.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7. 먹는 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8. 샘물 허가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0.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2.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⑨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
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구
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⑨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
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
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
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
책의 수립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
한 사항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
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책 수립

11.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
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2. 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u>관리에 관한 사항</u>	<u>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u>
<u>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13. 지하수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연구 및 발전</u>
<u>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u>	<u>14. 지하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사·관측·관리에 관한 사항</u>
<u>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15. 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u>
<u>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16.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u>
<u>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운영</u>	<u>17.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u>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u>	<u>18. 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u>	<u>19. 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20.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u>
<u>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u>	<u>21.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u>
<u>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⑩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u>	<u>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u>
<u>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u>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u>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⑩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삭 제
3.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8.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9.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10.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3. 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5.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2. 호소의 물환경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13.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15.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16.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12.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7.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8.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7.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0.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1. 오염총량관리 관련 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2.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4.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26.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

23.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4.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의2.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4의3.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27.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3.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35.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36.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37.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8.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

수립

5.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7.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10. 삭 제
11.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12.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생활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 ⑫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한 사항

39.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 ⑪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4.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정보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

10.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15.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8. 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19.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20. 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⑫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⑬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 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 참가 지원
6.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 시행

⑭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관련 교육 · 홍보,

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 호소구역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 평가 및 석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6. 생물축정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⑬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
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
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
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
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
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
로그램 운영

8.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⑮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
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
위원회 구성·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
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중
합·조정

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
관리기준 설정

9.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10.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
의 설정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수도, 하수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물 재이용 촉진
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 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수립·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10.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⑭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연구 및 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5.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

14. <u>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u>	<u>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5. <u>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및 보급</u>	9. <u>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16. <u>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u>	10. <u>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7. <u>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u>	11. <u>해수민물화 및 지하수·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u>
18. <u>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2. <u>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19. <u>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u>	13. <u>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u>
20. <u>삭 제</u>	14. <u>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21. <u>삭 제</u>	15. <u>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u>
22. <u>삭 제</u>	16. <u>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23. <u>삭 제</u>	17. <u>댐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4. <u>삭 제</u>	18. <u>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25. <u>그 밖에 생활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보건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u>	19. <u>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u>

①⑥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20.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21.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22. 댐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수자원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①⑤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에 보시설의 설치 추진

7.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

<u>의 구성·운영</u> 10. <u>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u> 11. <u>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u> 12. <u>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u> 13. <u>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14. <u>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운영</u> 15. <u>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6. <u>석면합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u> 17. <u>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u> 18. <u>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u>	8. <u>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u> 9. <u>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u> 10. <u>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u> 11. <u>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12. <u>도시침수 대응에 관한 사항</u> 13. <u>환경부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u> 14. <u>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5. <u>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u> 16. <u>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17. <u>친수구역 조성 차별화 전략·비전의 수립</u> 18. <u>친수구역 조성 정책 추진 및 효과 분석</u> 19. <u>친수구역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20. <u>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 지침 등의 마련 및 운용</u>
--	--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중
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⑰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
· 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
정·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
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
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1.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
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2.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3.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협의

24.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
의 조성 및 관리

26.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수립 및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
수구역개발이익의 환수

27. 친수구역조성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28.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
한 사업 지원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 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 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삭 제

22. 삭 제

⑮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지물질의 지정

1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4.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15.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17.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9.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0.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1.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
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이행

22.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
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
축·운영에 관한 사항

24.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
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
· 감독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
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27.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⑪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
에 관한 사항
3.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
한 사항
4. 화학제품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
항
5.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6. 위해우려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8.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에 관한 사항
9. 살생물(殺生物)제품을 포함
한 화학제품 관련 법령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10.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
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⑳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 ·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4.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 · 시행
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 · 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제조 · 수입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9.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 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 ·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1. 장외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 ·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

항

1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7.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

및 위해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

한 사항

19.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

사에 관한 사항

20.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

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

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장외영향평가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화학사고 표준·실무 매뉴얼 총괄·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5.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관리

26.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관리

제7조의2(물통합정책국) ① 물통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통합정책국에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물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6.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8.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9.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
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수계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1.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
항
12.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4. 삭 제
15.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
대책의 수립
16.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
17.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
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18.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

3.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
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
항
7.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
리에 관한 사항
8. 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
도 작성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
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
치 평가에 관한 사항

터링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물통합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4. 상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7. 가물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9.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3.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6.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8. 먹는 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9. 샘물 허가에 관한 사항
 20.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11.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3.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5.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⑤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협

<u>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u>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u> 9. <u>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0. <u>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책 수립</u> 11. <u>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u> 12. <u>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u> 13. <u>지하수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연구 및 발전</u> 14. <u>지하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사·관측·관리에 관한 사항</u> 15. <u>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u> 16. <u>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u> 17. <u>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18. <u>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u>	<u>의</u> 5. <u>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u> 6. <u>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u> 7. <u>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u> 8. <u>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u> 9. <u>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u> 10. <u>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u> ⑦ <u>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정·개정</u> 2. <u>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u> 3. <u>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 관리</u> 4. <u>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u>
---	--

<u>관리에 관한 사항</u> 19. <u>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20. <u>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u> 21. <u>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u> 제8조(물환경정책국) ① <u>물환경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물환경정책국에 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 및 생활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u>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u> 2. <u>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u> 3. <u>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u> 4. <u>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u> 5. <u>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u>	<u>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u> 5. <u>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6. <u>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운영</u> 제8조(자원순환국) ① <u>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생활폐기물과·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u>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자원순환기본정책의 수립</u> 2. <u>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u> 3. <u>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u>
--	--

<u>구축·운영</u>	<u>한 사항</u>
<u>6.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u>	<u>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u>
<u>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u>	<u>한 사항</u>
<u>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u>	<u>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u>
<u>립에 관한 사항</u>	<u>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u>
<u>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u>	<u>6.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u>
<u>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u>	<u>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u>
<u>제제도에 관한 사항</u>	<u>에 관한 사항</u>
<u>10.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u>	<u>8.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촉</u>
<u>에 관한 사항</u>	<u>진에 관한 사항</u>
<u>11.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u>	<u>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u>
<u>12. 호소의 물환경에 대한 정기</u>	<u>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u>
<u>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u>	<u>사항</u>
<u>13.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u>	<u>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u>
<u>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u>	<u>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u>
<u>리에 관한 사항</u>	<u>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u>
<u>14.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u>	<u>않는 사항</u>
<u>에 관한 사항</u>	<u>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u>
<u>15.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u>	<u>을 분장한다.</u>
<u>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u>	<u>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u>
<u>16.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u>	<u>총괄</u>
<u>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u>	<u>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u>
<u>관한 사항</u>	<u>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u>
<u>17.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u>	<u>사항</u>
<u>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u>

1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0.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1. 오염총량관리 관련 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2.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4.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26.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8.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출입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 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3.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물환경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물환경정책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4.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 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u>항</u> 6. <u>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u> 7. <u>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u> 8. <u>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9. <u>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u> 10. <u>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u> 11. <u>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u> 12. <u>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u> 13. <u>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4. <u>수질오염물질의 지정</u> 15. <u>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u> 16. <u>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u> 17. <u>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u> 18. <u>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u>	<u>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u>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0. <u>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 11. <u>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⑦ <u>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u> 2. <u>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3. <u>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u>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5. <u>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u>
--	--

19.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20. 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⑤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
에 관한 사항
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
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및 석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6. 생물측정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에 관한 사항
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
에 관한 사항
10.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
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
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
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 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 관리기준 설정

9.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10.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수도, 하수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물 재이용 촉진
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14.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15.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
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수자원정책국) ① 수자원정
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② 수자원정책국에 수자원정책
과·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
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보한다.

제9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
과·환경피해구제과·생활환경
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
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되,
환경보건정책과장·환경피해구

③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연구 및 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6.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해수민물화 및 지하수·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

제과장·생활환경과장·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제품관리과장 및 화학안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수립·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u>한 사항</u>	<u>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u>
<u>13. 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u>	<u>조사연구·기술개발</u>
<u>관한 사항</u>	<u>10.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u>
<u>14.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u>	<u>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u>
<u>제도의 입안·연구 및 발전에</u>	<u>마련에 관한 사항</u>
<u>관한 사항</u>	<u>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u>
<u>15.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u>	<u>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u>
<u>관한 사항</u>	<u>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u>
<u>16.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u>	<u>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u>
<u>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u>	<u>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u>
<u>구·발전에 관한 사항</u>	<u>관리</u>
<u>17.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u>	<u>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u>
<u>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u>
<u>18. 댐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u>	<u>진</u>
<u>관한 사항</u>	<u>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u>
<u>19.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u>	<u>리</u>
<u>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u>
<u>20. 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 종합</u>	<u>련정보·통계의 수집·관리</u>
<u>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및 보급</u>
<u>21.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u>	<u>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u>
<u>22.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u>	<u>관한 사항 총괄</u>
<u>한 사항</u>	<u>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u>
<u>23. 댐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u>	<u>중·장기대책 수립</u>
<u>산관리에 관한 사항</u>	<u>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u>
<u>24. 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u>	<u>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항</u>	<u>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u>

25. 그 밖에 수자원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자원정책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7.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영기준에 관한 사항

12. 환경부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3.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15.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친수구역 조성 차별화 전략 · 비전의 수립
17. 친수구역 조성 정책 추진 및 효과 분석
18. 친수구역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 지침 등의 마련 및 운용
20.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1.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2.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협의
2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 · 운영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 · 운영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 · 운영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대책 수립

2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관리

25.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수립 및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환수

26. 친수구역조성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2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⑤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사
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과 운
영에 관한 사항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
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
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
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
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
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

정 · 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 · 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 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 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 · 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11.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
에 관한 사항
17.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8.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

에 관한 사항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5.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6.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이행
27.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29.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

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

· 감독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

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32.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
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1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
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의 수립·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
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
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
지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
항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
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
한 사항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
사에 관한 사항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
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
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
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화학사고 표준·실무 매뉴
얼 총괄·개정 등 관련 매뉴
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

	<u>관 · 관리</u> <u>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u> <u>총괄 · 관리</u>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생략)	제23조의2(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 · 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u>정보관리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감축목표팀은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u>	② ----- ----- ----- ----- ----- ----- <u>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화학안전관리단) ① (생략)	제28조의2(화학안전관리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위해우려제품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4.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u> -----

5. ~ 21. (생략)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생략)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생활환경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

5. ~ 21.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1. (현행과 같음)

2. 환경보건국: -----

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 ~ 5. (생 략)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갈등조
정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
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대변
인을 보좌하는 사항, 갈등조정
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
는 사항, 환경교육팀장이 자연
환경정책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
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
항은 대변인이, 갈등조정팀장이

3. ~ 5.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 사항과 환경교육
팀장이 분장하는 -----

----- 제1항에 따른 존
속기한이 -----

--- 대변인이 보좌하고, 환경교

<u>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환경교육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각각 보좌한다.</u>	<u>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정책과장이 분장한다.</u>
---	---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610</u>		<u>612</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 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101</u>		<u>103</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9</u>		<u>60</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2</u>		<u>21</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90</u>	• <u>391</u>	+1
일반직 계	<u>390</u>	<u>391</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u>2</u>	<u>3</u>	+1
•	•	•	
•	•	•	
<u>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u>	<u><신 설></u>	<u>2</u>	+2
<u>기상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10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 ·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	· · <u>1</u> · · <u>3</u> ·	· · <u>2</u> · · <u>2</u> ·	+1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25</u>	• <u>626</u>	+1
일반직 계	• <u>625</u>	• <u>626</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u>	<u>7</u>	+1
•	•	•	
행정주사	<u>24</u>	<u>25</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99</u>	<u>98</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70</u>	<u>66</u>	-4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45</u>	<u>49</u>	+4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 <u>9</u>	· · <u>10</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41</u>	<u>40</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5</u>	<u>8</u>	+3
· 환경서기보	· <u>10</u>	· <u>7</u>	-3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1</u>	• <u>164</u>	+3
일반직 계	<u>161</u>	<u>164</u>	+3
•	•	•	
•	•	•	
방송통신주사	<u>11</u>	<u>12</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8</u>	<u>20</u>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1</u>	• <u>164</u>	+3
일반직 계	<u>161</u>	<u>164</u>	+3
•	•	•	
•	•	•	
방송통신주사	<u>11</u>	<u>12</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8</u>	<u>20</u>	+2
•	•	•	
•	•	•	